

1. 품 명 : 국제선 전용 출입국 심사대 부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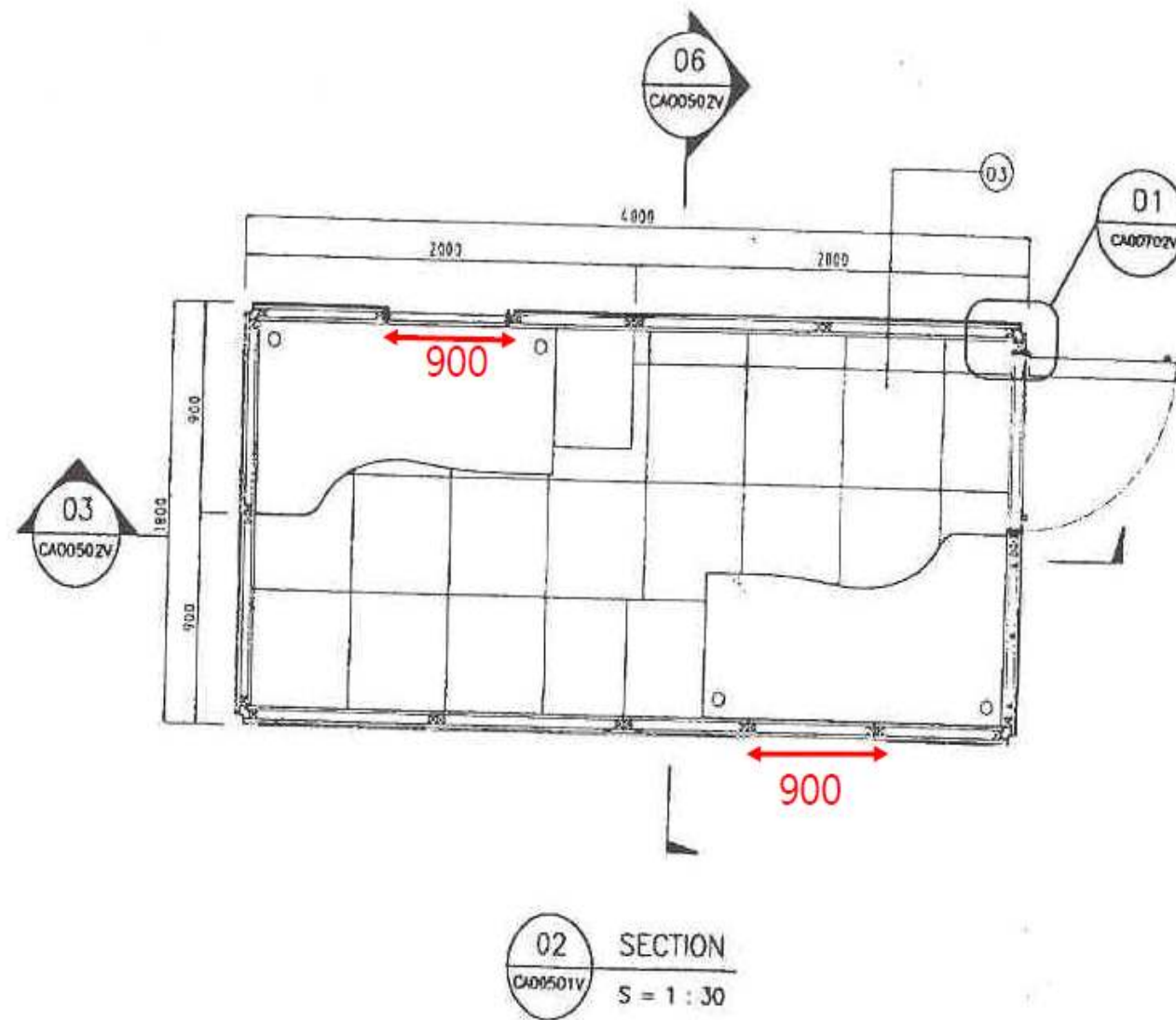
2. 수 량 : 5대

3. 규격사항 : 평면도 및 측면도에 기재된 사이즈를 규격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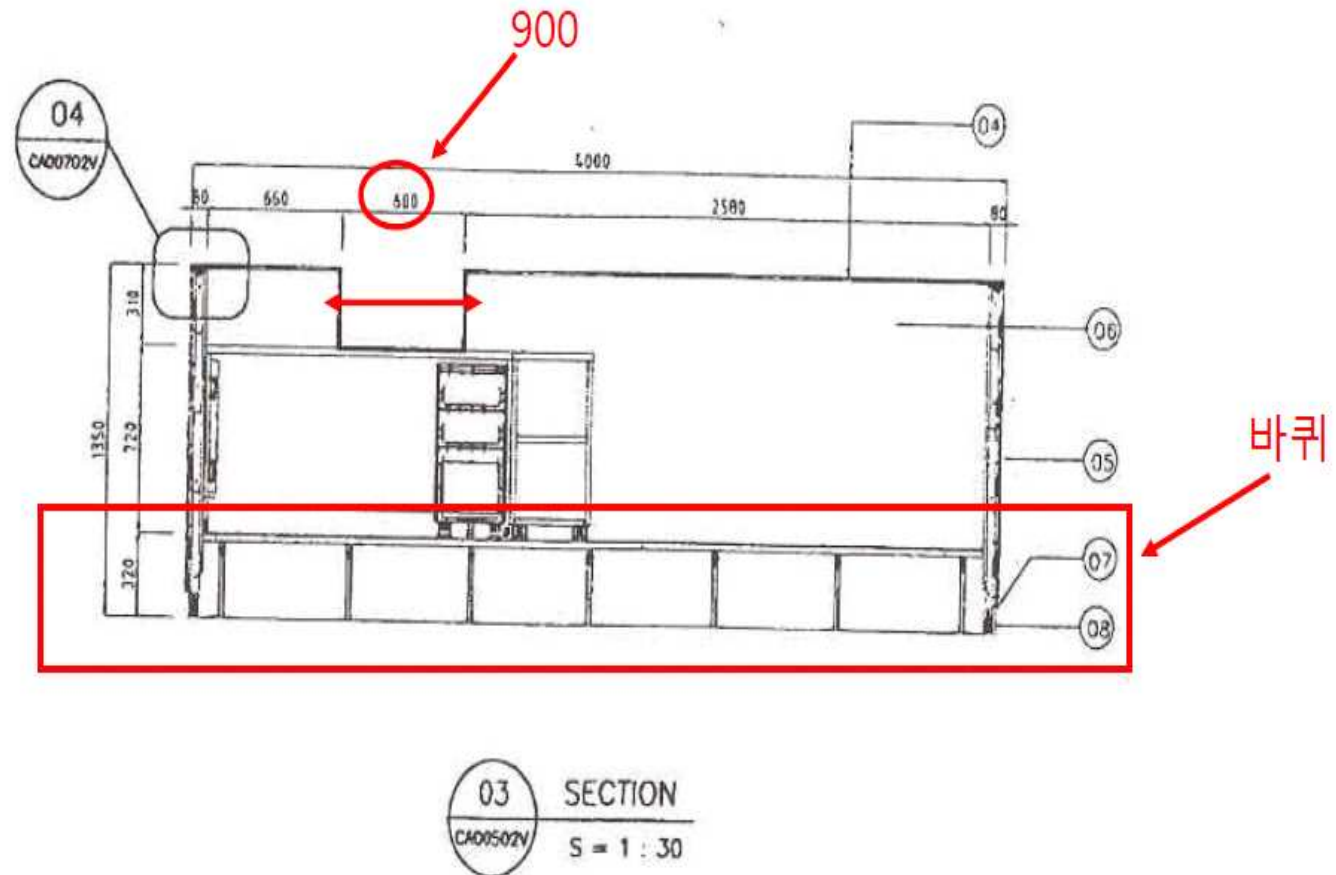
4. 일반사항

- 1) 본 물품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(여수공항 보호구역 내)로 납품(설치)하여야 한다.
- 2) 본 물품은 신규 제작 제품으로 규격 사항에 정확하게 부합하여야 한다.
- 3)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검수·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- 4) 납품기한은 제작 및 배송 일정을 고려하여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한다.
- 5) 계약상대자는 검사자의 입회하에 실시된 성능 점검이 계약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납품할 수 있다.
- 6) 하자이행조건
 - 제조 물품의 제품 상태가 불량할때에는 재납품하여야 한다.
 - 제조 물품을 재납품함으로서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.

[평면도(상면도)]



[측면도]



2인 이상이 올라가도 하중을 지지하여함
 심사관의 안전을 위해 바퀴는 심사 중에는 완전히 고정되어야 함

심사대 및 여권받침대 개선 後



